子心とういれいませるな





	기 관 의 장
선	
선 람	

금정구 구보 호외 제 338-11 2018. 12. 31.(월)

(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)

	I
0	

○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(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864호) ------ **2**

l					
회람					
ᆝ路담					
—					
	1				

발 행 : **부산광역시 금정구** 편 집 : 문화관광과(**☎**519-4071)

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경 끼 영

2019년 1월 1일

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 864 호

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

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위원회 구성인원 등)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8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 - 1. 조례 제10조제4항제1호(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): 40명 이내
 - 2. 조례 제10조제4항제2호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4조에 따라 부산 광역시에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): 5명 이내

- 3. 조례 제8조제3항제3호(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): 5명 이내
- ②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추천을 받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(이하 "구"라 한다) 관내에 사무소를 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제3조(위원모집 홍보)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금정소식지,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4조(공개모집 신청방법)** 조례 제10조제4항제1호의 공개모집 위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의 선정기준)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조례 제10조제4항 규정의 해당 여부
- 2. 예산 · 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
- 3. 임무수행 능력
- 4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**제6조(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)**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 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
 - ②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해제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조례 제13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.
 - 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및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**제7조(분과위원회 구성)**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구의 업무분야별 4개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 - 1. 기획총무분과위원회: 기획감사실, 총무과, 문화관광과, 평생교육과, 재무과, 세무과, 민원봉사과, 보건행정과, 건강증진과, 금정도서관, 금정문화회관 2. 복지경제분과위원회: 사회복지과, 여성가족과, 생활보장과, 일자리경제과, 자원순환과, 환경위생과
 - 3. 안전도시1분과위원회 : 도시안전과, 교통행정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, 토지정보과
 - 4. 안전도시2분과위원회 : 도시재생추진단, 건설과
 - ②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은 12명~13명 이내로 한다.
 - 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치하되,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행정동인 위원이 동일한 분과위원회에 3명 이상 포함되는 경우 조정 배치할 수 있다.
- 제8조(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)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,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·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.
- **제9조(예산학교 운영)** 구청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을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서

성 명					
생년월일 (성별)		E-mail			
주 소	우편번호(-)				
직 장 및	직장명 :	직 위 :	직 위 :		
전화번호	☎ 자택 : 직장 :	휴대전화 :			
주요경력					
비고					

※ 타 지역 거주자로서 직장소재지가 금정구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

위 본인은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: (서명)

금정구청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제 호

위 촉 장

주 소 : 성 명 :

귀하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금 정 구 청 장(인)

[별지 제3호서식]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

일 시				장 소	
-1 11 11 -1	재적위원	참석	불참	(불참위원)	
참석상황					
안 건					

O 심의내용

O 의결사항

O 기타사항

	위 원 장		부위	원장	간 사		
서 명	성 명	서 명	성 명	서 명	성 명	서 명	